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2026. 6.

I | 개요

1 | 사업개요

가. 계약명 :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나. 목 적

- KCA 인터넷 및 전용회선 계약의 만료 시점('26. 9. 26.)이 도래에 따른 기간 통신 서비스 사업자 재선정 필요
-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고신뢰성 이중화 전용 회선 체계 구축
- 국가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원내 기밀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폐쇄망 확보

다. 소요예산 : 금 1,087,852,160원 (월 18,130,869원, VAT포함)

라. 계약기간 : `26. 9. 27. ~ `31. 9. 26.(장기계속계약, 5년)

마. 주요 서비스 내역

- 두 지점(End-to-End)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독립 회선 구성
- 고성능과 고품질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송 처리
-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 복구 및 기술 지원

바. 계약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함

2 사업범위

가. 회선 서비스

- 인터넷(2회선) · 전용회선(16회선) 운영 및 이중화 구성
- 계약기간 내 네트워크 IP 관리 시스템 무상제공(유지관리 포함)

순번	서비스	설치위치	속도
1	인터넷	본사-외부망	1Gbps
2		본사-외부망	
3	전용회선	서울본부	100Mbps
4		북서울본부	
5		부산본부	
6		경인본부	
7		충청본부	
8		경북본부	
9		경북본부 포항지사	
10		전남본부	
11		전남본부 여수지사	
12		전남본부 목포지사	
13		전북본부	
14		강원본부	
15		강원본부 강릉지사	
16		제주지사	
17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8		본사-광주광역시청	

나. 인프라 서비스

- 지방본부 IP대역 분리, 자체 DDoS 장비 구성현황 개선 지원
- DDoS 공격 대응 서비스 제공, DDoS 모의훈련 수행 지원

다. 기타 서비스

- 365일 24시간 관제 시스템 보유 및 모니터링 툴 제공
- 설비 이상·재해·정전 등 장애(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라. 네트워크 구성

[비공개]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 ※ 단,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흥원에 방문해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II 제안요청사항

1 일반사항

- 가. 본 제안요청서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제안요청서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나. 전용회선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및 특성,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파악(환경조사)하여 이용기관별 다양한 통신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시스템의 기능이 미흡하여 발주기관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다. 제안사는 본 제안서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하고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변경, 해지, 누락되는 부분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사가 책임지고 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전송장비 설치비 및 유지보수, 통신랙 등)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하며, 광전송장비를 제외한 시설 장비는 협약기간 만료 후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및 발주사의 안정적인 지속 운영을 위하여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하고, 발주사가 장비 일체 반납을 희망 하는 경우 무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 마. 협약기간 중 기관 이전으로 인한 노드 변경, 하위국 변경 등으로 선로 재구성 및 전송장비 이설을 할 경우 회선료 증액이 없어야 하며, 기관 폐쇄, 부서 재배치, 등 서비스 종료에 따른 회선 해지 시에는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다.

- 바. 계약기간 중 상품(전용회선 등)의 이용요금 단가는 추가 및 축소에도 동일해야 하며, 회선 축소로 인한 대금 산정은 협의를 통해 서비스 보상, 이용 금액 변경 등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사.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 신청(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에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별도로 서비스 전환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아. 또한 본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구현 방식, 제안사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비스품질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다. 이에 따른 협약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차. 이용약관 적용의 오류로 인한 제반 책임은 사업자 귀책으로 한다.
- 카. 서비스 사용 협약기간 중 트래픽 수요 증가 등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사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회선사용료 또는 대역폭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서비스 품질이 협약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중도 철회할 수 있다.
- 타. 제안하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는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사양 및 버전이어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시스템의 확장성 및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파.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1) 장비 모델명, 제조사, 규격 및 선정 사유
 - 2) 장비 수량(장비별 구성요소 포함) 및 설치 장소
 - 3) 장비 성능 및 안정성 증명을 위한 검증 자료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인증 제품 및 보안적합성 검증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하. 제안되는 모든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생산된 지 1년 이내 신규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보안장비는 국가정보원의 인증제품(CC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거. 국가정보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모든 제안 장비는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약속서를 사업수행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너. 제안사는 발주사와의 사업기간 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 사업 수행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시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보고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기관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가. 제안요청서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IoT 도입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
계약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입찰유의서

4

보안사항

- 가. 계약기간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내부의 자료구성, 구현기법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또한 보상하여야 한다.
- 나.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 발견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며,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다.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국가 및 진흥원의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된다.

Ⅲ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 분류	페이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통신망 구축 일반사항	
	ECR-002	통신망 및 전송장비 구성	
	ECR-003	안정적인 통신망 전환	
성능 요구사항	PER-001	대역폭 성능 및 가용성 보장	
	PER-002	사이버보안 공격 대응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SER-003	자료 및 투입인력 관리	
	SER-004	사업 수행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복구	
	QUR-002	정보시스템 품질보장(SLA)	
제약사항	COR-001	사업수행 관련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관리	
	PMR-002	안전보건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3	통신망 제공 시험 및 사후조치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통신망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PSR-002	안정화 및 개선지원 요구사항	
	PSR-003	비상 시 대응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제안요청서와 제반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통신망이 제공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제공하는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시스템의 기능이 미비하여 기관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하고 대체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및 전송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정보자원 등과 상호 운용성·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최신 Firmware 등 보안 조치가 완비된 장비로 구성 ○ 도입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응해야 함 ○ 도입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한 소음 발생의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응해야 함 ○ 임대장비 및 케이블 등에 Name Tag를 부착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인 통신망 전환
<p style="text-align: center;">요구사항 상세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 전환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통신망 전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기존 통신망을 서비스 중단 없이 전환하기 위한 통신망 전환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 포설, 대체장비 확보, 기관 통신장비 연결 등 전송망 전환환경 구성 방안 - 통신망 전환환경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서비스 무중단 실현을 위한 전송망 전환 시나리오 제시 ※ 통신망 전환 시나리오는 전환 절차별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방안 및 이용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일정계획 제시 - 전환 전후 통신망별 기능 유지방안 및 기능 개선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 발주 기관의 공인 IP 변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타사의 공인 IP 유지를 위한 임대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한다. ○ 부득이하게 IP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방안(사업자 이원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발주사의 허가를 통해 변경한다., 변경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기관의 공인IP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공인IP 개수 이상의 공인IP를 제공 - IP 변경범위, 영향도 및 대처방법, 전환 방안(서비스 무중단 확보 방안 등)등을 제시 - IP 변경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AS번호 할당 및 IP주소 독립 사용자 등록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 공단의 독자적 공인 인터넷망 운용 방안(소요 회선/장비, 유지 관리 등)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 보안장비 등) 공인 IP 변경 작업 총괄 수행하며, 변경에 따른 부가 비용이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공인 IP 변경 시 모든 제반 비용과 제안사 미고려 사항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망 전환(변경) 시 장비 정책, 파일 및 DB 등의 무결성 있는 Migration을 실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다. ○ 제안사는 통신망 전환에 따른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성 방안을 제시 ○ 통신망 전환은 사전 시험망 구성, 사전 점검 등 이전 준비과정을 반드시 우선 거친 후 실시 ○ 전환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작업, 시범전환, 본 전환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 절차, 세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본 전환 시에는 기관, 계층, 서비스 중요도, 노드, 권역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선 단위별로 "전환 → 상태 확인 → 회선 전환 → 안정화" 순으로 진행
산출정보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역폭 성능 및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안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의 대역폭의 성능 요구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해당 속도보다 높은 속도가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순번	서비스	설치위치	회선수	속도
	1	인터넷	본사-외부망	2개	1G bps
	2	전용회선	지방본부	14개	100M bps
	3		기타	1개	100M bps
	4			1개	10M b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입자들(타기관)과 공용하여 사용하는 Shared 방식의 회선이 아닌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방식(독립망:Dedicated)의 인터넷 회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 인터넷 회선은 이중화 구성되어 Active-Standby 운영되어야 하며 Active회선 장애 시 Standby회선으로 Fail-over되어야 하며, 전환 시간은 5분 이내여야 한다. ○ 본원의 인터넷은 이중화 구성되어 Active-Standby 운영해야 함 ○ 발주사는 국가기술자격관련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지방본부의 전용 					

	<p>회선은 논리적으로 업무망과 CBT망으로 이중화를 구성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사의 자체 DDoS 장비와 메트로스위치 간 배치구조를 분석하고 원활한 DDoS 공격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제시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트래픽 흐름도와 전송 회선 장애 시(선로장애, 전송장비 장애 등) 자동 우회전송, 복구 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위한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 성능검증 결과 미달 시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공격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DDoS 공격 자동 탐지/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원화 서비스 회선 모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방어용량 내에서는 DDoS 공격 발생 시에도 서비스 대상 IP는 DDoS 공격 피해가 없어야 한다. ○ 발주처의 DDoS 모의훈련 수행 시 훈련용 트래픽 생성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2023. 4.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생성된 산출물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대책 마련 및 시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관련규정 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자체 보안 교육 및 진단 실시 ○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보안관리 실시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국가정보원 등 보안성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완료 후 외부에 유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 상 책임을 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p>< 누출금지 정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div>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투입인력 관리

<p>요구사항 상세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착수계 제출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내부 자료 유출 방지와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p>산출정보</p>	<p>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정보보안 교육 이수 관련 자료 등</p>

<p>요구사항 고유번호</p>	<p>SER-004</p>
<p>요구사항 분류</p>	<p>보안 요구사항</p>
<p>요구사항 명칭</p>	<p>사업 수행 보안 요구사항</p>
<p>요구사항 상세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과 인수자(제안사의 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p>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p>○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p>○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p>○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p>
<p>산출정보</p>	<p>자료관리대장(전자 또는 수기),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참여인력별 보안 확약서</p>

라. 품질 요구사항

<p>요구사항 고유번호</p>	<p>QUR-001</p>
<p>요구사항 분류</p>	<p>품질 요구사항</p>
<p>요구사항 명칭</p>	<p>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복구</p>
<p>요구사항 상세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통신망이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 발주사에서 트래픽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콘솔을 제공해야 함 ○ 장애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장애를 복구하고 원인 규명 보고서

	를 48시간내에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동일 장애가 지속 발생할 경우 동일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장비로 무상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보장(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서비스 수전 협약(SLA)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SLA 목표기준에 미달 지표가 발생할 시 보상 기준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전용통신망 제공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 제안사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 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전송망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규 전송망으로 서비스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안사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기 통신망 제공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통신망 사업 시작이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본 사업의 계약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통신망 서비스가 완벽하게 전환되어 기관 통신망 서비스 사용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본 사업의 계약자는 기존 회선료로 일할 계산하여 회선요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외 사항의 경우 외부 공개를 금하며,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 유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사의 최종 유권해석을 따름
<p>산출정보</p>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요구사항 고유번호</p>	<p>PMR-001</p>
<p>요구사항 분류</p>	<p>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
<p>요구사항 명칭</p>	<p>사업수행 관리</p>
<p>요구사항 상세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별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 분야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인력구성 방안 및 각 인력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제안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합격등급을 취득한 후 사업을 착수 ○ 제안서 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안내용 대비 변경사항을 변경요청서로 작성하여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 ○ 자원의 변경 및 대상업무의 변경, 주요인력의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과업변경, 일반 변경, 기타 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제공 시험 및 사후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 제공·전환에 따른 시험·검수 관련 절차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름 ○ (시험요청) 계약업체는 통신망 제공·전환을 완료하고,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험 요청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구성도, 구성요소(장비, 광선로, 관리환경 등)별 설치내역 - 시험환경, 시험인력,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결과 등 ○ 시험은 발주사가 지정한 요원들과 사업수행 인력들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으로 분리하여 공동으로 수행 ○ 제안사는 시험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점검 결과보고서, 운영지침서 - 유지관리 계획서(유지관리 조직도, 장애처리 절차 등) 등 ○ (시험의 수정·보완) 시험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발주사는 시험확인서 및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제안사에 통보하고, 제안사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시험을 요청 ○ (과업의 변경)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공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발주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치 ○ (추가 시험) 통신망 제공·전환 완료 후 제공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시험 등 추가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지원 및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계약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며 발주사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발주사는 제안사가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수행 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 ○ 제안사가 통신망 제공·전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유지시키고, 회선요금은 서비스 유지 기간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
<p>산출정보</p>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요구사항 고유번호</p>	<p>PSR-001</p>
<p>요구사항 분류</p>	<p>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
<p>요구사항 명칭</p>	<p>통신망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p>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전송망 및 인터넷 서비스망 관련 장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기관에 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계획서(통신실 위치, 케이블 연결 등)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존 전송망 및 서비스망의 회선 (장비)교체 시 제공 방안 - 기타 전송망 및 서비스망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안사는 도입 정보통신망 제공 시 통신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통신실에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연결해야 함 ○ 하드웨어 장비는 전산실 내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Rack Type으로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업무특성, 현안사항 발생 등 이용기관 통신수요에 따른 회선 및 통신트래픽 대역폭 증·감속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망 대역폭의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개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 내 통신망 제공·전환 완료 후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1개월 동안을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투입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망 제공·전환에 참여한 사업관리 책임자 등 전문기술 인력이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일별 통신망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 시 대응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인터넷 서비스망 및 전송망의 안정성과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관리 체계, 장애처리 절차, 복구 대책 등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장애 발생을 대비한 비상복구 대책반 구성 및 기 검증된 실행 가능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백업회선으로 절체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원 현황을 제시
산출정보	

IV 제안서 평가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 체결 형태 : 장기계속계약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145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입찰 참가 등록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름
- 평가 일정 등 상세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한 평가표 따라 평가한다.
-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 「(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대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라.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 순위와 후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 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마. 평가위원회는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이탈자 및 잘 보이지 않아 보완하는 등의 추가자료 요청은 평가 진행 중 요구할 수 있다.

바. 제안관련 문의

- 사업관련: AI디지털심화팀 조수빈(061-350-1568, bin258@kca.kr)

4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A】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	5점	정량평가	
		사업경험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5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5점	정성평가	
		추진 전략	10점		
		적용 기술	5점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		
		제약 사항	5점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사항	5점		
		품질 요구사항	5점		
	프로젝트 관리 (5점)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계획	5점		
	프로젝트 지원 (20점)	유지 관리	5점		
		하자 보수 계획	5점		
		비상 대책	10점		
	소 계			90점	
	입찰가격 평가【B】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A+B】			100점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평가기준
기술 능력 평가 【A】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사업경험	사업수행실적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름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5점)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계획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점)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가. 정량평가 세부 판정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

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기타사항

-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 함.
-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한다.
-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 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 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 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 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마.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 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바.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사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 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V

제안서 관련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 A4, PDF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2 제안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제안서	㉓ 정량적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증명서 ㉔ 정성적 제안서 (별지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 자료로 활용 가능)
기타서류	㉓ 정보 비공개 동의서
발표자료	㉓ 제안요약서 등

2 제안서 제출양식

작성 항목	작성 방법
I.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III.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기밀보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결과 활용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VI. 첨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VI 별지 서식

- [붙임 1] 정보 비공개 동의서
-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 [붙임 4] 주요사업실적
- [붙임 5] 사업실적 증명서
- [붙임 6] 비밀유지계약서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붙임 7] 보안 협약서
- [붙임 9] 보안 서약서

[붙임 1]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 립 년 도		사 업 분 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교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교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교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5]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구분	ISP/BPR ()		
						PMO/감리 ()		
					시스템개발 ()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6]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 _____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진흥원이 계약상대자에게 " _____ **용역명** _____ " (이하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진흥원"이라 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③ "본 용역" 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비밀정보"란 진흥원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은 진흥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범위) ① 진흥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진흥원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진흥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진흥원이 계속 보유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이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진흥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통해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흥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진흥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을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이 소유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진흥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 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진흥원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내부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진흥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진흥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사항 준수) ① 사업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26 . . .

“진흥원”

"계약상대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이 상 훈 (인)

대표이사 ○ ○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항	처리 기준
보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1] 참고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3.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5.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유형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②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시스템 정보 및 개인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프로그램 소스코드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기타	① 용역사업 결과물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붙임 7]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극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과 진흥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 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무단조회, 누출, 오용 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